

[일시고용입국 비자 서한 비공식 번역]

2015년 3월 2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대한민국

장관님 귀하,

본인은 뉴질랜드에서 특정전문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시고용입국과 관련한 우리의 논의사항들을 언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뉴질랜드 정부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 협정 발효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뉴질랜드는 아래 열거된 전문직종에 속하며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최대 200명의 대한민국 전문직 종사자에게 한 번 입국 시 최대 3년간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할 것이다. 단, 다음 내용을 조건으로 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 (i) 입국신청을 한 직종과 관련 있는 직종에서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진실한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한다.
- (ii)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요구한 관련 학위 수준(Level 7 혹은 그 이상)을 충족하거나 관련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 (iii) 필요시, 뉴질랜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직종	자격 요건
한국어 강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한국어교원자격증
태권도 강사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에서 인정한 태권도 4단 이상 단증
한국인 여행 가이드	한국관광공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받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발행하고 등록한 유효한 관광 가이드 자격증
한의사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한의사 면허 소지자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	영상 제작분야에서 최소 3년간의 전문 경력
생명의학 공학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충족: (i) 관련된 위성던 협정에서 의해 승인된 공학학부 학위, 또는 (ii) 공학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
삼립 과학자	삼립 과학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
식품 공학자	식품 과학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고, 동 산업에서 학위 취득 후 최소 3년 동안 관련 업무경력 보유
수의사	수의학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고, 뉴질랜드 수의사 이사회에 등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공학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

2. 동 조치에 따라 어떠한 개별 직종의 입국자 수도 각 직종별 뉴질랜드 체류 가능 대한민국 전문직 종사자 상한선인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뉴질랜드는 노동시장평가, 경제수요평가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갖는 여타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지원자들은 건강 및 신원 요건을 포함한 뉴질랜드 내 고용 지원을 위한 모든 그 밖의 이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동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3년간 일한 대한민국 국민은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 3년을 보내지 않는 한 동 조치에 따른 재입국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뉴질랜드 체류기간 동안 여전히 여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5. 동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적용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는 달리 공동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치가 발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합하여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 바에 따라 이 조치에 명시된 특정전문직종을 검토하며, 상호 결정된 변경사항들은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이행될 것이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귀하에게 본인의 정중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팀 그로서
통상 장관
뉴질랜드

[일시고용입국 비자 서한 비공식 번역]

2015년 3월 23일

팀 그로서
통상 장관
뉴질랜드

장관님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뉴질랜드에서 특정전문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시고용입국과 관련한 우리의 논의사항들을 언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뉴질랜드 정부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랍니다.

1. 뉴질랜드는 아래 열거된 전문직종에 속하며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최대 200명의 대한민국 전문직 종사자에게 한 번 입국 시 최대 3년간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할 것이다. 단, 다음 내용을 조건으로 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 (i) 입국신청을 한 직종과 관련 있는 직종에서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진실한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한다.
- (ii)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요구한 관련 학위 수준(Level 7 혹은 그 이상)을 충족하거나 관련 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 (iii) 필요시, 뉴질랜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직종	자격 요건
한국어 강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한국어교원자격증
태권도 강사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에서 인정한 태권도 4단 이상 단증
한국인 여행 가이드	한국관광공사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받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발행하고 등록한 유효한 관광 가이드 자격증
한의사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한의사 면허 소지자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	영상 제작분야에서 최소 3년간의 전문 경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충족: (i) 관련된 워싱턴 협정에서 의해 승인된 공학학부 학위, 또는 (ii) 공학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
삼립 과학자	삼립 과학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
식품 공학자	식품 과학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고, 동 산업에서 학위 취득 후 최소 3년 동안 관련 업무경력 보유
수의사	수의학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고, 뉴질랜드 수의사 이사회에 등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공학 학사학위 또는 동등한 학력

2. 동 조치에 따라 어떠한 개별 직종의 입국자 수도 각 직종별 뉴질랜드 체류 가능 대한민국 전문직 종사자 상한선인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뉴질랜드는 노동시장평가, 경제수요평가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갖는 여타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지원자들은 건강 및 신원 요건을 포함한 뉴질랜드 내 고용 지원을 위한 모든 그 밖의 이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동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3년간 일한 대한민국 국민은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 3년을 보내지 않는 한 동 조치에 따른 재입국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뉴질랜드 체류기간 동안 여전히 여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5. 동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적용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는 달리 공동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치가 발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합하여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 바에 따라 이 조치에 명시된 특정전문직종을 검토하며, 상호 결정된 변경사항들은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이행될 것이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귀하에게 본인의 정중한 경의를 표하는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언급된 조치를 평가하는 더한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동 조치가 양국 우호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귀하에게 본인의 정중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대한민국